

의안번호	제 273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8년 10 월 6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3
----------	-----

제출연월일 : 2008년 10월 6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동 규정·규칙이 개정('08.7.3)됨에 따라 이를 우리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 기준 설정(별표 1)
  - 일반직 80%이상, 기능직 18%이내, 별정직·정무직 2%이내
- 지방공무원직급별 정원채정 기준 설정(별표 2)
  - 일반직공무원
    - ▷ 4급이상 7%이내, 5급 21%이내, 6급 34%이내, 7급 35%이내  
8급·9급 3%이상
  - 기능직공무원
    - ▷ 6급 5%이내, 7급 12%이내, 8급 19%이내, 9급 32%이내  
10급 32%이상
  -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 연구관 15%이내, 연구사 85%이상
    - ▷ 지도관 26%이내, 지도사 74%이상
  - 소방직공무원
    - ▷ 소방정이상 1%이내, 소방령 3%이내, 소방경 6%이내,  
소방위 8%이내, 소방장 14%이내, 소방교 31%이내,  
소방사 37%이상

- **별정직공무원**

▷ 4급상당 이상 5%이내, 5급상당 20%이내, 6급상당 48%이내  
7급상당 15%이내, 8급상당 10%이내, 9급상당 2%이상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내용 변경(별표 3)**

- 기구와 관련 있는 상위직정원(4급이상)은 조례로 정하고 하위직은  
규칙으로 규정

※ 5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서 총수만 규정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조를 제5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3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기 능 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0%이상	18%이내	2%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 지방공무원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비 율	7%이내	21%이내	34%이내	35%이내	3%이상

###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5%이내	12%이내	19%이내	32%이내	32%이상

###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15%이내	85%이상	26%이내	74%이상

### 4.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이내	3%이내	6%이내	8%이내	14%이내	31%이내	37%이상

### 5.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5%이내	20%이내	48%이내	15%이내	10%이내	2%이상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 업 소
총 계	2,668	-			
정 무 직 계	1	1			
도지사	1	1			
일 반 직 계	1,051	-			
2-3급	1		1		
3급	8	7		1	
3-4급	1	1			
4급	59	42	7	4	6
5급이하소계	982	-			
별 정 직 계	21	-			
1급 상당	1	1			
5급상당이하소계	20	-			
연 구 직 계	136	-			
연 구 관	20			17	3
연 구 사	116	-			
지 도 직 계	24	-			
지 도 관	6			6	
지 도 사	18	-			
소 방 직 계	1,130	-			
소 방 정	10	2		8	
소방령이하	1,120	-			
교육공무원계	42	-			
학장	1			1	
교수·부교수·조교수· 전임강사	30			30	
조 교	11	-			
기 능 직 계	263	-			

\*연구관, 지도관, 교수 등은 정원관리기관별로 규정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0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b>제1조(목적)</b> ----- ----- -----지방공무원 정원----- -----.</p> <p><b>제3조(정원책정기준)</b> ①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b>제4조(직급별 정원)</b>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p><b>제5조(직렬별 정원)</b>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p><b>제3조(정원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의 규정)</b> 본청 · 의회사무처 · 직속기관 · 사업소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고, 그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p><b>제5조(직렬별 정원)</b>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이하(시·군·구는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 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